



100-021. 鮮內검사국 정보-1

■ 1933년부터 1934년 까지 淸津地方法院, 平壤地方法院, 光州地方法院에서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보낸 문서로서, 淸津地方法院에서의 治安維持法 違反事件의 예심종결결정서, 기소장 및 사건판결서 등 5건과 平壤地方法院에서의 예심종결결정서, 판결서 등 10건 및 光州地方法院에서의 3건 등 총 18건의 문서 수록

1. 1933년 4월 20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崔乙吉 외 14명에 대한 예심청구서 사본 : 사건당사자는 崔乙吉, 黃水南, 崔南山, 黃玉山, 車有南, 李泰鳳, 崔馬山, 池哲萬, 李仁洙, 林正德, 鄭八吉, 朴用學, 李龍俊, 孫春逢, 任龍岩 등이며, 적용죄명은 治安維持法 違反, 騷擾暴力行為 등 處罪에 관한 法律 違反, 保安法 違反, 公務執行妨害, 傷害, 犯人藏匿 등 이다.
2. 1934년 8월 23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崔乙吉 외 19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등 예심종결결정서 사본 : 사건당사자 중 崔乙吉은 치안유지법위반, 소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안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黃玉山, 崔馬山, 林正德, 李龍俊, 黃水南, 車有南, 池哲萬, 崔南山, 鄭八吉, 孫春逢, 李泰鳳, 李仁洙는 치안유지법 위반, 朴用學, 任龍岩은 범인은닉, 朴承龍, 鄭龍洙, 崔鶴山, 朴太乙, 安今孫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淸津地方法院의 공판에 회부하였다.
3. 1934년 11월 30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崔乙吉 외 19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등 위반사건 판결서 사본 : 崔乙吉 징역 5년, 崔馬山 징역2년, 朴太乙 징역 2년, 鄭龍洙, 林正德, 孫春鳳 징역 1년 6월, 黃玉山, 李龍俊, 黃水南, 車有南, 池哲萬, 鄭八吉, 崔南山, 李泰鳳, 李仁洙, 任龍岩, 朴承龍, 崔鶴山, 安今孫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朴用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4. 1934년 9월 10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韓鳳麟, 崔國炫, 李振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군기보호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 韓鳳麟, 崔國炫은 징역 7년, 李振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5. 1934년 11월 24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黃道欽, 黃甲龍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嚴兌植에 대하여도 위 양인과 같이 동량의 형을 선고하였다.
6. 1931년 7월 3일 平壤地方法院 檢事局 檢事가 예심을 청구한 문서 : 鄭達憲, 崔今玉, 襄承龍, 趙英玉, 明德相, 金鍾聲, 孫學玄, 姜周龍이 사건 당사자로 되어 있다.
7. 1933년 4월 10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예심종결결정서 사본 : ‘全朝蘇未色 勞動組合 組織計劃事件’ 당사자 鄭達憲, 崔今玉, 襄承龍, 趙英玉, 明德相, 金鍾聲, 孫學玄, 鄭斗桓을 平壤地方法院의 공판에 회부한다는 예심종결결정서이다.
8. 1934년 5월 8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鄭達憲 외 7명에 대한 판결서 사본 : 鄭達憲은 징역 6년, 襄承龍, 崔今王, 趙英玉, 明德相, 金鍾聲, 孫學玄, 鄭斗桓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9. 1933년 7월 25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徐福孫 외 7명에 대한 기소장 사본 : 徐福孫에게는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 강도예비,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류 단속령 위반, 동 시행규칙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이 적용되고, 安永俊에게는 범인은닉, 강도예비, 총포화약류 단속령 시행규칙 위반이 적용되었으며, 그 밖에 金基鎭, 趙鳳淳, 李燦源, 李春永, 韓用淳, 禹賢奎 등은 범인은닉혐의로 기소되었다.
10. 1934년 7월 5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전항 (9)의 徐福孫 외 7명에 韓信

玉을 추가한 9명에 대한 예심종결결정서의 사본 : 같은 사건을 예심청구, 예심종결, 기소, 공판 등을 거치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문건이다.

11. 1934년 10월 11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 등 판결서 사본 : 전항과 동일한 사건이다. 형량을 살펴보면 徐福孫은 死刑, 韓信玉은 징역 6년, 安永俊은 징역 2년, 이 밖에 李春永, 金基鎭, 趙鳳淳, 李燦源, 韓用淳, 禹賢奎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2. 1934년 10월 9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 사건 당사자 崔公集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중 검거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3. 1934년 11월 13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사본 : 사건 당사자 全福同은 징역 5년, 金鳳圭는 징역 2년, 金淳鎭는 징역 1년, 文成奎는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다.
14. 1934년 12월 13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 李化淳, 盧錫聖은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았다.
15. 1934년 12월 20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 사건 당사자 柳海權은 징역 13년의 선고를 받았다.
16. 1934년 10월 22일 光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판결서 사본 : 사건 당사자 林秉周는 징역 2년, 安秉石은 징역 1년 6월, 孫光采, 金鳳洙는 각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
17. 1934년 10월 22일 光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 사건 당사자 朴漢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18. 1934년 11월 20일 光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 사본 : 사건 당사자 呂道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